

결 정 서

제 호

신 청 인

처 분 청

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신청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이
있었으므로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주 문

이 유

년 월 일

발 신 명 의

직인